

#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36
----------	------

제출연월일 : 2019.10. .

발의자 : 김은영 의원

## 1. 제안이유

- 하남시와 투자기관 등이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거나 건립하는 공공 시설 등에 대하여 그 투입 비용과 설치업체, 관리부서 등의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납세자의 자긍심과 하남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공시설 등 필요한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 나.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등을 정함 (안 제3조)
- 다. 공개하는 범위를 규정함 (안 제4조)
- 라. 공개의 방법 및 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6. 예산 수반 사항 : 없음

## 7.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19년 10월 28일 ~ 11월 7일(10일)
-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 8. 기타 참고사항 : 붙임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 9. 관련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① 하남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

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상하수도,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한다.

④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제6조(공개방법)** ① 제5조제1항의 공개내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한 여러 공공시설물을 하나의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②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교체·리모델링·대수선 할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공개 내용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부착위치 등은 그 공공시설물 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개대상 공공시설물(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설 물
1. 도로 ·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li><li>-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보안등</li><li>- 벤치, 미디어폴 등 주민편익시설</li><li>- 자전거 보관대</li><li>- 교량 · 육교</li></ul>
2.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정차 단속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li></ul>
3. 공원·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원 안내표지판</li><li>- 벤치,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물</li><li>- 미술작품, 조형물</li><li>- 체육시설물(테니스장, 축구장, 운동기구 등)</li><li>- 하천시설물</li></ul>
4. 청소 ·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로휴지통,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li></ul>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징 조형물</li><li>- 그 밖의 시설물</li></ul>

##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 가. 현금
  - 나. 유가증권
  -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제60조(재물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59조(정기재물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물조사지침을 작성할 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정부의 정기재물조사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재물조사를 한 후 그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자료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자치단체명	조례(규정) 명	제·개정일자	관련부서
조례	경기 광명시	광명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7-12-29	행정재정국 회계과
조례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7-09-28	회계과
조례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8-02-05	자치행정국 회계과
조례	경기 부천시	부천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7-07-10	재생활용과
조례	경기 안양시	안양시 공공시설물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8-01-05	기획경제국 회계과
조례	경기 광주시	광주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6-02-29	자치행정국 회계과
조례	서울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7-07-20	안전행정국 재무과
조례	서울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6-11-10	기획경제국 재무과
조례	서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8-01-05	기획재정국 재무과
조례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7-02-23	기획재정국 재무과
조례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7-09-28	기획재정국 재무과
조례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7-10-19	기획재정국 재무과
조례	서울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2017-09-27	경제재정국 재무과
조례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7-07-13	재무과
조례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7-11-10	재정경제국 재무과
조례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8-03-15	재정경제국 재무과
조례	부산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7-02-27	총무국 재무과
조례	전남 진도군	진도군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9-09-25	세무회계과
조례	전남 해남군	해남군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9-01-01	재무과
조례	전남 목포시	목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9-01-28	기획문화국 회계과

##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내용

### ■ 광역자치단체(8개 단체)

[2019. 10. 1. 현재]

연번	자치단체	공개대상	공개범위	공개내용	공개방법	비 고
계	7		- 1억 이상: 4 - 5억 이상: 1 - 10억이상: 2 - 연면적 100m <sup>2</sup> : 1			
1	서울시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 공공시설물: 50만	- 설계·감리자 · 시공사 성명 - 건설기술자	- 설치자 또는 시공사	
2	강원도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 설계·감리자 · 시공사 성명 - 건설기술자	- 시공사	
3	경기도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 설계·감리자 · 시공사 성명 - 건설기술자	- 시공사	
4	광주시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0억	- 설계·감리자 · 시공사 성명 - 건설기술자	- 시공사	
5	부산시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0억	- 설계·감리자 · 시공사 성명 - 건설기술자	- 시공사	
6	울산시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 설계·감리자 · 시공사 성명 - 건설기술자	- 시공사	
7	인천시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 공공시설 및 건축물 : 연면적 100m <sup>2</sup>	- 설계·감리자 · 시공사 성명 - 건설기술자	- 시공사	
8	전 남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 공공시설 및 건축물 : 5억	- 설계·감리자 · 시공사 성명 - 건설기술자	- 시공사	

## ■ 기초자치단체(20개 단체)

[2019. 10. 1. 현재]

연번	자치단체	비공개	공개범위	공개내용	공개방법	비고
계	20					
1	경기 광명시	재물조사대상물품 맨홀, 보도블럭 등	시설물 : 300만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설치자 또는 시공자	
2	경기 남양주시	-	시설물 : 50만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설치자 또는 시공자	
3	경기 동두천시	-	시설물 : 50만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시공자	
4	경기 부천시	재물조사대상물품 맨홀, 보도블럭 등	시설물 : 300만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설치자 또는 시공자	
5	경기 안양시	재물조사대상물품 맨홀, 보도블럭 등	시설물 : 1000만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설치자 또는 시공자	
6	경기 광주시	재물조사대상물품 맨홀, 보도블럭 등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0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시공자	
7	서울 관악구	재물조사대상물품 맨홀, 보도블럭 등	시설물 : 50만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설치자 또는 시공자	
8	서울 구로구	재물조사대상물품 맨홀, 보도블럭 등	시설물 : 50만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설치자 또는 시공자	
9	서울 노원구	재물조사대상물품 맨홀, 보도블럭 등	시설물 : 500만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설치자 또는 시공자	
10	서울 동대문구	재물조사대상물품 맨홀, 보도블럭 등	시설물 : 50만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설치자 또는 시공자	
11	서울 동작구	재물조사대상물품 맨홀, 보도블럭 등	시설물 : 100만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설치자 또는 시공자	
12	서울 마포구	재물조사대상물품 맨홀, 보도블럭 등	시설물 : 100만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설치자 또는 시공자	
13	서울 서대문구	재물조사대상물품 맨홀, 보도블럭 등	시설물 : 50만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설치자 또는 시공자	
14	서울 영등포구	재물조사대상물품 맨홀, 보도블럭 등	시설물 : 100만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설치자 또는 시공자	
15	서울 용산구	재물조사대상물품 맨홀, 보도블럭 등	시설물 : 50만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설치자 또는 시공자	
16	서울 은평구	재물조사대상물품 맨홀, 보도블럭 등	시설물 : 100만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설치자 또는 시공자	
17	부산 중구	재물조사대상물품 맨홀, 보도블럭 등	시설물 : 100만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설치자 또는 시공자	
18	전남 진도군	재물조사대상물품 맨홀, 보도블럭 등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설치자 또는 시공자	
19	전남 해남군	재물조사대상물품 맨홀, 보도블럭 등	시설물 : 1000만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설치자 또는 시공자	
20	전남 목포시	재물조사대상물품 맨홀, 보도블럭 등	시설물 : 200만 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 1억 이상	설계 · 감리 · 시공자 발주기관 관련자료 등	설치자 또는 시공자	